

# 최근 산재현황과 정책과제

윤 조 덕\*

## I. 산재보험 적용 대상사업장 및 적용근로자수 증가 추이

###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 증가

2000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수는 909,461개소에서 2009년 1,560,949개소로 지난 8년간(2001~2009) 71.64%(651,533개소)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 8년간 매년 평균 8.95%씩 대상 사업장수가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가장 사업장수가 많은 기타의 사업의 경우 2001년 537,609개소에서 2009년 970,364개소로 지난 8년간(2001~2009) 80.50%(432,755개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장수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2001년 187,253개소에서 2009년 257,686개소로 지난 8년간(2001~2009) 37.61%(70,433개소) 증가하였다.

### 2. 적용근로자수 증가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수는 2001년 10,581,186명에서 2009년 13,884,927명으로 지난 8년간(2001~2009) 31.22%(3,303,741명) 증가하였다. 적용근로자수가 가장 많은 기타의 사업의 경우 2001년 3,992,610명에서 2009년 6,022,169명으로 지난 8년간(2001~2009) 50.83% (2,029,559명) 증가하였다(표 1 참조). 제조업의 경우 2001년 2,922,342명에서 2009년 3,182,262명으로 지난 8년간(2001~2009) 8.89%(259,920명) 증가하였다.

\* 前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표 1> 산재보험 업종별 연도별 적용 현황(2001~2008)

(단위: 개소, 명)

	2001		2006		2007		2008		2009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전산업	909,461	10,581,186	1,292,696	11,688,797	1,429,885	12,528,879	1,594,793	13,489,986	1,560,949	13,884,927
금융보험업	7,145	385,890	26,776	399,638	27,742	403,901	34,642	570,253	35,257	579,275
광업	1,089	19,111	1,267	15,656	1,239	16,105	1,246	15,275	1,146	13,732
제조업	187,253	2,922,342	236,429	3,032,667	247,460	3,095,377	255,073	3,103,942	257,686	3,182,262
전기가스 수도	,805	49,390	925	53,796	,997	53,984	1,077	54,479	1,110	52,952
건설업	143,200	2,438,649	149,874	2,547,754	193,993	2,887,634	297,521	3,248,508	236,741	3,206,500
운수·창고· 통신업	26,952	660,374	38,199	676,725	41,671	697,833	43,408	703,249	44,356	708,584
임업	3,283	86,550	5,781	73,381	6,551	72,366	7,390	66,269	8,494	74,109
어업	289	1,958	148	352	,829	2,768	883	5,395	877	2,940
농업	1,839	24,312	3,281	31,781	3,818	34,528	4,193	37,739	4,918	42,424
기타의 사업	537,609	3,992,610	830,016	4,857,047	905,585	5,264,383	949,360	5,684,880	970,364	6,022,169

자료: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각년도.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2010), 『산재보험·고용정수 실적분석 2009』.

### 3. 대상 사업장수 및 대상 근로자수 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산재예방 제도 및 인력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증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재예방 대상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 중 산업안전감독 대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제3조(적용범위) 제1항 단서조항에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산재예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제2장(안전보건 관리체제), 제28조(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제31조(안전보건교육),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안전보건 진단 등),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

청 등)이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증가에 부응하여 산재예방 담당인력(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및 감독인력(노동부 산재예방 감독관)이 증가되어야 하나 현실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김형수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2005년도 한국의 노동부 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수는 340명으로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는 3,324개소이며, 감독관 1인당 근로자수는 32,527명이다. 이는 독일(2002년도)의 감독관수 5,300명,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 798개소 및 감독관 1인당 근로자수 8,979명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2003년도)의 감독관수 5,263명,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 1,235개소 및 감독관 1인당 근로자수 20,326명과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영국(2002년도)의 감독관수 2,830명,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 636개소 및 감독관 1인당 근로자수 8,450명과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부 안전보건분야 일선 근로감독관 1인당 행정대상은 2001년도 감독관 1인당 사업장수 2,709개소 및 근로자수 22,609명에서 2005년도 3,324개소 및 32,527명으로 4년(2001~2005) 사이에 각각 22.7% 및 43.8% 증가하였다).

## II. 산업재해 발생 추이

### 1. 개요

2009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수는 97,821명이다. 이 중 업무상사고자수는 91.11%(89,100명)이며 업무상질병자수는 8.89%(8,721명)이다(표 2 참조). 근로자수 1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70%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재해율은 0.64%, 업무상 질병자수 재해율은 0.06%이다.

사망자수는 2,181명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64.24%(1,401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35.76%(780명)이다. 근로자수 10,000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1.57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1.01,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은 0.56이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2006년 0.77%에서 2009년 0.70%로 지난 3년간(2006-2009)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 김형수 외(2006),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성과측정지표 개발 및 실효성 강화방안』(연구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2.

<표 2> 산업재해 발생추이(2006-2009)

(단위: 개소, 명, %)

	2009	2008	2007	2006
○ 사업장수(개소)	1,560,949	1,594,793	1,429,885	1,292,696
○ 근로자수(명)	13,884,927	13,489,986	12,528,879	11,688,797
○ 재해자수(명)	97,821	95,806	90,147	89,910
· 업무상사고자수	89,100	86,072	78,675	79,675
· 업무상질병자수	8,721	9,734	11,472	10,235
- 사망자수(명)	2,181	2,422	2,406	2,453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1,401	1,448	1,383	1,332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780	974	1,023	1,121
○ 재해율(%)	0.70	0.71	0.72	0.77
· 업무상 사고자수	0.64	0.64	0.03	0.68
· 업무상 질병자수	0.06	0.07	0.09	0.09
○ 사망만인율	1.57	1.80	1.92	2.10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1.01	1.07	1.10	1.14
-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0.56	0.72	0.82	0.96

주: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사망만인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자료: 노동부 홈페이지, 「200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0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 중분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보험 사업종류별<sup>2)</sup>(중분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 전산업 평균재해율은 0.70%이다(표 3 참조). 재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속및비금속광업의 24.50%로 2009년도 한 해 동안 근로자 100명당 24명이 산업재해를 당하였음을 의미한다.

전산업평균재해율(0.70%)보다 배 이상(1.40% 이상) 높은 업종은 광업에서는 6개 업종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석탄광업(17.55%), 금속및비금속광업(24.50%), 채석업(9.09%), 석회석광업(1.70%), 제염업(2.60%), 기타광업(2.37%) 등이다.

제조업에서는 32개 업종 중 전산업평균재해율(0.70%)보다 배 이상(1.40% 이상) 높은 업종은 9개 업종으로 제재및베니어판제조업(3.87%), 목제품제조업(2.90%),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5.83%),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4.63%), 시멘트제조업(1.59%),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48%), 금속재료제품제조업(1.53%), 선박건조및

2) 산재보험에서는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3>은 산재보험의 사업단위를 중심으로 한 (중분류) 산업재해 발생현황이다.

수리업(1.41%), 기타제조업(1.53%) 등이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는 8개 업종 중 전산업평균재해율(0.70%)보다 배 이상(1.40% 이상) 높은 업종은 2개 업종으로 화물자동차운수업(2.54%),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1.43%) 등이다.

임업(1.57%), 어업(2.24%), 농업(1.46%)에서는 모두가 전산업평균재해율(0.70%)보다 배 이상(1.4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타의 사업에서는 10개 업종 중 2개 업종에서 전산업평균재해율(0.70%)보다 배 이상(1.4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농수산물위탁판매업(1.92%), 위생및유사서비스업(1.60%) 등이다.

이와 같이 전산업평균재해율보다 배 이상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대책과 투자가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의 산재예방대책과 투자는 제조업위주의 제조업 편중의 재해예방대책과 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로 인하여 제조업 이외의 타 업종의 재해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예방대책과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 업종 산재발생증가 문제점 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보고서(2007)의 업종별 3년간(2003~2005) 평균 산재보험료 부담액, 산재보상급여 지급액, 산재예방사업 투자액, 재해율, 강도율 등 현황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총 산재예방 투자액은 184,045,206,338원이며, 이 중 제조업이 89.72%(165,131,094,026원)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기타의 사업 3.99%(7,338,814,967원), 건설업 3.96%(7,295,753,078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 1.11%(2,049,668,141원), 금융보험업 0.18%(332,597,229원),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0.39%(725,001,391원), 광업 0.37%(678,052,302원), 임업 0.11%(190,729,638원), 농업 0.07%(120,634,818원), 어업 0.06%(106,222,192원)의 순이다. 지난 3년간(2003~2005) 연평균 재해율이 가장 높은 금속 및 비금속 광업(45.86%)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액(962,870,810원) 대비 산재예방사업 투자액(78,155,597원)의 비율(투자율)은 8.1%이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가장 재해율이 높은 업종인 화물자동차운수업(2.78%)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액(16,882,161,493원) 대비 산재예방사업 투자액(115,099,359원)의 비율(투자율)은 0.7%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가장 재해율이 낮은 업종인 신문, 화폐발행, 출판업 및 경인쇄업(0.26%)의 경우 산재보험료 부담액(8,578,112,953원) 대비 산재예방사업 투자액(812,199,151원)의 비율(투자율)은 9.5%이다<sup>4)</sup>.

3) 감사원(2007)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감사」, p.11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각 업종의 재해발생추이나 산재보상지급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재예방사업대상을 결정하거나 산업재해발생위험이 낮은 사업장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산재예방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추진”.

4) 감사원(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감사」, pp.47~49.

<표 3> 산재보험 사업종류별(중분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2009)

(단위: 명, %)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 체	13,884,927	97,821	2,181	0.70	1.57
광업 소계	13,732	1,118	399	8.14	290.56
석탄광업	4,605	808	336	17.55	729.64
금속 및 비금속광업	298	73	36	24.50	1208.05
채석업	539	49	6	9.09	111.32
석회석광업	1,353	23	5	1.70	36.95
제염업	154	4	0	2.60	0.00
기타광업	6,783	161	16	2.37	23.59
제조업 소계	3,182,262	32,997	561	1.04	1.76
식품제품제조업	189,545	2,267	29	1.20	1.53
담배제조업	2,956	14	0	0.47	0.00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갑)	90,313	481	6	0.53	0.66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을)	87,200	849	22	0.97	2.52
제재 및 베니어판제조업	6,930	268	5	3.87	7.22
목재제품제조업	41,901	1,214	13	2.90	3.10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48,748	668	7	1.37	1.44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및 경인쇄업	74,964	163	4	0.22	0.53
인쇄업	43,338	398	6	0.92	1.38
화학제품제조업	291,822	2,925	55	1.00	1.88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업	42,936	143	1	0.33	0.23
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120	7	0	5.83	0.00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생산업	648	30	5	4.63	77.16
고무제품제조업	49,854	648	14	1.30	2.81
도자기제품제조업	8,503	45	1	0.53	1.18
유리제조업	28,311	341	5	1.20	1.77
요업 또는 토석제품제조업	33,930	540	13	1.59	3.83
시멘트제조업	6,641	32	5	0.48	7.53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222,431	5,509	91	2.48	4.09
금속제련업	26,971	75	8	0.28	2.97
금속재료제품제조업	61,251	936	20	1.53	3.27
도금업	40,893	474	13	1.16	3.18
기계기구제조업	379,416	4,886	83	1.29	2.19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53,638	839	12	0.55	0.78
전자제품제조업	490,756	715	15	0.15	0.31
선박건조 및 수리업	171,118	2,413	53	1.41	3.10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121,412	1,383	9	1.14	0.74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65,917	663	8	1.01	1.2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191,383	1,922	18	1.00	0.94
계량기광학기계정밀기구	73,490	306	4	0.42	0.54
수제품제조업	26,361	180	6	0.68	2.28
기타제조업	108,565	1,663	30	1.53	2.76
전기·가스 및 수도업 소계	52,952	114	9	0.22	1.70
전기·가스 및 수도업	52,952	114	9	0.22	1.70
건설업 소계	3,206,526	20,998	606	0.65	1.89
건설업	3,206,526	20,998	606	0.65	1.89
운수창고 및 통신업 소계	708,584	4,372	132	0.62	1.86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57,765	166	6	0.29	1.04
자동차여객운수업	281,324	1,369	50	0.49	1.78
화물자동차운수업	19,910	506	24	2.54	12.05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92,860	1,324	27	1.43	2.91
항공운수업	31,727	51	1	0.16	0.32
운수관련서비스업	116,794	371	7	0.32	0.60
창고업	30,218	262	11	0.87	3.64
통신업	77,986	323	6	0.41	0.77
임업 소계	74,109	3,091	23	1.57	3.10
임업	74,109	3,091	23	1.57	3.10
어업 소계	2,940	66	3	2.24	10.20
어업	82	2	1	2.44	121.95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2,858	64	2	2.24	7.00
농업 소계	42,445	620	11	1.46	2.59
농업	42,445	620	11	1.46	2.59
기타의 사업 소계	6,022,102	33,961	425	0.56	0.71
농수산물위탁판매업	3,491	67	1	1.92	2.86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523,121	3,957	46	0.76	0.88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271,095	4,345	64	1.60	2.36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28,366	312	2	1.10	0.71
기타의 각종사업	3,646,885	20,217	280	0.55	0.77
전문기술서비스업	388,940	440	11	0.11	0.2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83,171	2,651	16	0.34	0.20
교육서비스업	328,235	1,897	3	0.58	0.09
해외파견업	29,711	23	1	0.08	0.34
주한미군	19,087	52	1	0.27	0.52
금융보험업 소계	579,275	484	12	0.08	0.21
금융보험업	579,275	484	12	0.08	0.21

자료 : 노동부 홈페이지, 「200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pp.22 ~ 24.

### Ⅲ. 소규모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2008년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총 1,594,793개 사업장의 13,489,986명 피보험근로자에 게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가 95,806명에게 발생하여 전 사업장 평균재해율은 0.71%를 나타내고 있다.

사업장규모별 재해율을 보면, 전사업장 평균재해율(0.71%)보다 높은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59%로 가장 높으며, 다음은 5~9인 사업장(1.08%), 10~29인 사업장(0.85%)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사업장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2005~2008)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2005년 59,831명→2008년 75,051명), 특히 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재해율이 증가하고 있다(2005년 1.52%→2008년 1.59%)(표 4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우선적인 예방정책과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예방정책은 이와 같은 필요성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 및 재해율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다각적인 예방정책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설계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에 관한 법(Arbeits-sicherheitsgesetz: Gesetz ueber Betriebsae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aefte fuer Arbeitssicherheit)’에 의한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조직 규정은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사업주의 의무로서 ①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업주모델(Unternehmermodel) 또는 ② 법령에 의한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외부 위탁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다<sup>5)</sup>.

5) HVBG(2006), *Gemeinsame Deutsche Arbeitsschutzstrategie*, p.11.



<표 4> 사업장 규모별 재해발생 추이(2005-2008)

(단위 : 개소, 명, %)

		2005	2007	2008
전 체	사업장수	1,130,094	1,429,885	1,594,793
	근로자수	11,059,193	12,528,879	13,486,986
	재해자수	85,411	90,147	95,806
	재해율(%)	0.77	0.72	0.71
5인 미만	사업장수	802,697	1,024,692	1,152,710
	근로자수	1,417,972	1,785,259	1,950,220
	재해자수	21,604	26,876	30,919
	재해율(%)	1.52	1.51	1.59
5 ~ 9인	사업장수	157,221	196,325	212,159
	근로자수	1,008,689	1,267,504	1,371,661
	재해자수	12,377	13,829	14,779
	재해율(%)	1.23	1.09	1.08
10 ~ 29인	사업장수	117,357	146,913	161,597
	근로자수	1,851,654	2,332,435	2,580,496
	재해자수	19,321	20,863	22,047
	재해율(%)	1.04	0.89	0.85
30 ~ 49인	사업장수	21,804	27,646	31,716
	근로자수	823,700	1,042,740	1,194,225
	재해자수	6,529	7,206	7,306
	재해율(%)	0.79	0.69	0.61
50 ~ 99인	사업장수	16,008	18,825	20,285
	근로자수	1,104,213	1,296,702	1,393,913
	재해자수	6,753	6,639	6,804
	재해율(%)	0.61	0.51	0.49
100 ~ 299인	사업장수	11,316	11,946	12,663
	근로자수	1,842,136	1,941,159	2,053,781
	재해자수	8,146	7,092	6,905
	재해율(%)	0.44	0.37	0.34
300 ~ 499인	사업장수	1,892	1,922	1,990
	근로자수	717,611	727,374	755,137
	재해자수	2,227	1,709	1,770
	재해율(%)	0.31	0.23	0.23
500 ~ 999인	사업장수	1,126	1,068	1,121
	근로자수	760,771	724,455	764,852
	재해자수	2,423	1,655	1,393
	재해율(%)	0.32	0.23	0.18
1000인 이상	사업장수	593	548	554
	근로자수	1,532,427	1,411,251	1,425,701
	재해자수	6,120	4,278	3,883
	재해율(%)	0.40	0.30	0.27

자료 : 노동부, 『산업재해분석』, 각년도.

## IV. 요양기간 장기화, 평균노동능력상실도 증가와 산재예방

### 1. 요양기간 장기화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2008년도에 요양이 종결된 자는 90,173 명이며, 이들의 재해발생 후 요양시작부터 요양종결까지의 치료기간은 평균 190.8일이다 (표 5 참조).

이와 같은 요양기간은 매년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장기요양 현상이며, 이로 인한 요양급여는 2008년도에 총 8,122억 원으로 전체 보험급여(3조 4,218억 원)의 23.7%를 차지하고 있다<sup>6)</sup>.

독일 산재환자의 평균입원기간은 프랑크푸르트 산재병원의 경우 2002년도에 산재환자 전체 평균은 13.8일인데, 이 중 척추손상환자는 69.9일, 패혈성 외과환자는 24.4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 산재환자의 장기입원 내지 장기요양 현상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7)</sup>.

〈표 5〉 요양종결자의 평균 요양기간 현황(2005-2008)

(단위: 건, 일, %)

	2005	2006	2007	2008
요양종결자수(명)	88,098	89,525	88,263	90,173
총 요양일수(일)	23,982,221	22,535,176	18,630,621	17,204,057
평균 요양기간(일)	272.2	251.7	211.1	190.8
(전년대비 증감률, %)		(-7.5)	(-16.1)	(-9.6)

자료: 노동부(2009), 『2008 산재보험사업연보』, p.130.

### 2. 산재장애인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 증가 추세

신규 산재장해판정자수는 2001년 25,360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6년을 정점(38,597명)으로 이후 감소추세이나 연간 3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표 6 참조). 또한 신규 산재장해판정자들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는 1996년 24.2%에서 2006년 27.8%로 지난 10년간 3.6%p 증가하였으며, 이후 27%대를 유지하고 있다.

6) 노동부(2009), 『2008 산재보험사업연보』, p.246.

7) 윤조덕 외(2005), 『주요 선진국의 요양재활사업 비교연구 - 독일과 한국』, 한국노동연구원, p.39.

### 3. 산재예방과의 관계

요양기간 장기화 및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의 증가는 재해근로자의 생산활동능력 감소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의 심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요양기간 장기화 및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산재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대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산재 발생 이후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병원 이송, 재해 발생 후 신속한 산재 요양신청, 신속전문적인 치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재로 인한 부상·질병의 치료 종결 후 남은 장애의 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연도별 신규 산재 장애판정자수 및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1996-2006)

(단위 : 명, 등급,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재해자수	71,548	66,770	51,514	55,405	68,976	81,434	81,911	94,924	88,874	85,411	89,910	90,147	95,806	
사망자수	2,670	2,742	2,212	2,291	2,528	2,748	2,605	2,923	2,825	2,498	2,453	2,406	2,422	
산재 등급 별	계	27,394	28,854	24,759	19,591	19,784	25,360	26,354	30,356	33,899	36,973	38,597	36,672	37,318
	1등급	181	133	82	79	87	108	118	146	148	221	247	209	196
	2등급	117	121	136	114	119	178	201	252	335	347	490	431	352
	3등급	213	245	171	164	140	212	215	235	229	284	380	418	353
	4등급	121	143	122	106	111	150	167	223	210	215	249	257	263
	5등급	418	517	477	385	403	518	624	674	680	939	1,023	950	919
	6등급	794	943	1,054	864	864	1,180	1,218	1,440	1,601	2,148	2,212	2,090	1,929
	7등급	1,078	1,148	941	754	709	1,059	1,056	1,112	1,426	1,661	2,025	1,998	2,011
	8등급	2,165	2,406	2,100	1,500	1,786	2,245	2,381	2,562	2,612	3,019	3,256	2,822	2,720
	9등급	1,623	1,581	1,296	986	972	1,201	1,249	1,394	1,491	1,687	1,868	1,678	1,795
	10등급	3,569	3,943	3,476	2,709	2,823	3,446	3,562	3,970	4,039	4,436	5,003	5,006	5,560
	11등급	3,699	3,566	2,772	2,335	2,448	3,101	3,052	3,366	3,387	3,472	3,475	3,334	3,657
	12등급	6,140	6,871	5,940	4,339	4,155	5,477	5,724	6,400	7,067	8,220	8,683	8,140	8,514
	13등급	1,494	1,435	1,206	1,035	1,184	1,355	1,251	2,251	3,640	2,911	2,051	1,979	2,074
14등급	5,782	5,802	4,986	4,221	3,983	5,130	5,536	6,331	7,034	7,413	7,635	7,360	6,975	
평균노동능력 상실(%)	24.2	24.6	25.0	25.0	25.4	25.8	26.0	25.6	24.9	26.5	27.8	27.6	27.1	

주: 장애등급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도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산재보험실무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음. 장애1~3등급: 노동력 100% 상실, 장애4등급: 노동력 92% 상실, 장애5등급: 노동력 79% 상실, 장애6등급: 노동력 67% 상실, 장애7등급: 노동력 56% 상실, 장애8등급: 노동력 45% 상실, 장애9등급: 노동력 35% 상실, 장애10등급: 노동력 27% 상실, 장애11등급: 노동력 20% 상실, 장애12등급: 노동력 14% 상실, 장애13등급: 노동력 9% 상실, 장애14등급: 노동력 5% 상실(출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부).  
 평균노동능력상실도(%)=(∑산재등급별 산재장애판정자수 × 노동능력상실도) ÷ (산재장애판정자수)

자료: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노동부(2009)에 의하면 2008년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재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초 요양신청서 접수일까지 평균 46.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8)</sup>. 이와 같은 산재발생시점부터 최초 요양신청접수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부상의 악화 및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 및 장애정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조덕 외(2005)에 의하면 사업장 내에서 사고발생시 응급처치를 하는 자는 사고 당시 근로동료근로자가 응급처치(54.5%), 119응급구조요원(27.1%),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 의가 응급처치(10.8%), 응급구조요원으로 훈련받은 근로자가 응급처치(4.5%)로 나타나 사업장 응급구조요원의 조직 및 교육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sup>9)</sup>.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 산재현황

2009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수는 97,821명이다. 이 중 업무상사고자수는 91.11%(89,100명)이며 업무상질병자수는 8.89%(8,721명)이다. 근로자수 1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0.70%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재해자수 재해율은 0.64%, 업무상 질병자수 재해율은 0.06%이다.

사망자수는 2,181명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64.24%(1,401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35.76%(780명)이다. 근로자수 10,000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1.57이며, 이 중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1.01,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은 0.56이다.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2006년 0.77%에서 2009년 0.70%로 지난 3년간(2006~2009)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근로자 10,000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2006년 2.10에서 2009년 1.57로 지난 3년간(2006~2009)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2.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의 5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증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재예

8) 노동부(2009), 『2008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p.130.

9) 윤조덕 외(2005),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39.

방 대상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 중 산업안전감독 대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특히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수는 이에 부응하여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검토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전산업평균재해율보다 배 이상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 산재예방 대책과 투자가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의 산재예방대책과 투자는 제조업 위주의, 제조업 편중의 재해예방대책과 투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제조업 이외의 타 업종의 재해가 증가함에도 예방대책과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 업종 산재발생증가 문제점 중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업종별 재해율에 따른 예방투자의 우선순위 및 투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한(특히 전산업평균재해율보다 높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와 제16조(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제외되어 있어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의무 등 다각적인 예방정책 및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설계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sup>11)</sup>

다섯째,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장기화 및 신규산재장해등급판정자의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의 증가는 재해근로자의 생산활동능력 감소의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 저하의 심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요양기간 장기화 및 평균 노동능력 상실도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산재예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중대재해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에 발생한 산재원인의 체계적 분석 및 이에 근거한 효율적 재해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

10) 감사원(2007)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감사」, p.11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반면, 4사분면에 속한 건설기계관리사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창고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재해율이 높은데도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11) 독일의 경우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ASiG)에 의한 소규모사업장안전보건조직 규정은 5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에 ①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업주 모델(Unternehmermodell) 또는 ② 법령에 의한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외부 위탁을 사업주의 의무로 하고 있다(HVBG(2006), *Gemeinsame Deutsche Arbeitsschutzstrategie*, p.11).

## &lt;참고문헌&gt;

- 감사원(200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한국산업안전공단 기관운영감사」.
- 김형수 외(2006),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성과측정지표 개발 및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각년도.
- 노동부 홈페이지, 「200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_\_\_\_\_, 「2008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_\_\_\_\_, 「200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 노동부(2009), 『2008 산재보험사업연보』.
- 윤조탁·윤순녕·김희걸·김상호·박수경(2005),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재활·복지)』, 한국노동연구원.
- 윤조탁·이현주·한충현(2005), 『주요 선진국의 요양재활사업 비교연구 - 독일과 한국』, 한국노동연구원.
- HVBG(2006), *Gemeinsame Deutsche Arbeitsschutzstrategie*.